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127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인석, 현민석, 박재완, 김지훈, 이상우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66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권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피고인이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664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나. 입찰방해
피 고 인	1.가. 주식회사 A 2.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 E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정섭(기소),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 안정호, 정영식, 홍기만 (피고인 주식회사 A, D을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인석, 이상우, 송각엽, 현민석 (피고인 주식회사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세종 담당변호사 변옥숙, 최재혁, 최한순 (피고인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지평 담당변호사 윤동영(피고인 E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2고단5300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A,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억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E 및 검사의 피고인 B, C,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D

(1)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그 일시, 장소에서 열렸던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이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2016. 6. 20.자 모임 이전에 위 모임에서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관한 기본합의 및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6에 대하여

제조4사 사이에서 각 제조사가 사용하는 '총지원율'의 개념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율 상한제한에 대한 합의가 성립할 수 없고, 그 일시, 장소에서 열렸던 모임에서 성립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였다는 '총지원율'에 관한 합의의 실질은 초과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피고인 A는 초과지원율을 대체로 80% 아래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총지원율에 관한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D이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다른 3개 회사들 사이에 총지원율 상한 제한에 관한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7에 대하여

① 피고인 A는 위 모임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홈류 제품에 대해 정찰제 시행을 결정하고, 실행했었는데, 다른 3개 회사 팀장들이 대리점이나 언론 등을 통해 이를 알고, 문의하기에 수동적으로 단순히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 A의 홈류 주력 상품은 'F 바닐라맛 대용량'으로 피고인 A에게 있어 홈류 제품 정찰제는 F 바닐라에 대한 정찰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위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3개 회사와 사이에서 정보공유가 없었고 가격 또한 4,500원이 아닌 5,500원으로 정찰제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정찰제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1) 이 사건 입찰방해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입찰방해 행위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2017. 입찰방해행위는 낙찰일인 2017. 6. 16.경 종료되었던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 10. 19. 제기된 이 사건 공소를 부적법하다.

(2) 피고인 B는 2018. 1. 15.경 G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1. 7.자로 보직이 변경되었던 바, 위 피고인들이 더 이상 위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이후 입찰방해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2억 원, 피고인 B, E: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9에 대하여

시판채널에 대하여 제조4사 사이에 기본합의를 하였고, 콘류 권장소비자 가격의 고정 합의 또한 위 기본합의에 따른 일련의 합의인 점, A 직원 H은 위 모임에서 담합 행위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들었고, 이를 상급자인 피고인 D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 A도 제조3사와 마찬가지로 콘류 권장소비자 가격을 1,500원으로 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D도 다른 3개 회사와 사이에서 콘류 권장소비자 가격에 대한 합의에 가담하였다.

나) 범죄일람표(유통채널) 연번 5에 대하여

위 모임은 제조 4사가 가격 등 담합행위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점, 피고인 A를 대표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I이 위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A가 다른 3개 회사와 합의내용과 같이 샌드류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도 다른 3개 회사와 사이에서 샌드류 가격에 대한 합의에 가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 D의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9의 합의내용란을 '○ 권장소비자가격 고정 합의 - 2018. 11.부터 콘류 제품 가격(G, J, K 각 1,300원, A 1,600원)을 1,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유통채널) 연번 5의 합의내용란을 '○ 편의점 가격 인상 합의 - 콘류 관련 G, J, K 3사, 샌드류 관련 빙과류 제조4사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인상 방법에 관하여 G, J, K이 콘류 제품 가격을 올리면, A가 뒤이어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 위 3사가 샌드류 제품 가격을 뒤따라 인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피고인 A, D에 대한 당심 변경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D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입찰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A,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공소장변경 이후에도 그 쟁점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아래 제4항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들[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입찰방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

1) 아래에서는 각 항소이유의 해당 부분을 주장한 피고인들만 지칭한다.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조4사 팀장들은 2017. 5.경 회합을 갖고, 2017.부터 2020.까지의 투찰순위를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오기 전까지 위 합의에 따라 2017.부터 2019.까지 합의한 순서대로 낙찰을 받은 점, ②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제조4사가 매년 각 입찰 시기마다 납품할 제품, 납품가격 등에 대한 논의[2]를 하여 계약수량, 납품가격 등이 달라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종전 2017. 5.경 합의를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경쟁의 회피를 통한 수익성 제고라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2017. 5.경 매년 입찰시기마다 각 회사별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기본합의를 토대로 각 회사별 낙찰물량과 투찰가격에 대해 협의한 것이므로, 기본합의 및 각 입찰연도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담합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특정 회사가 2017. 5.경 이루어진 위 기본합의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탈퇴하거나 기본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기본합의가 중간에 단절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주장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

2) 매년 입찰시기마다 제조4사 팀장들이나 울산지역 영업소 소장들이 만나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증거기록 별책1권 101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② 이 사건 입찰방해는 2017. 5.경 기본합의가 존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부터 2019.까지 이루어진 각 입찰연도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담합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퇴직하거나 보직을 변경한 이후에 이루어진 입찰방해가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전 범행에서의 기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심이 설시한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입찰방해라는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퇴직하거나 보직을 변경하기 직전이나 그 직후에 담합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① 피고인 D의 위 모임 참석 여부 및 위 모임에서 기본 합의와 소매점 침탈금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모임 참석자인 B, L, C, E의 진술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일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J의 빙과전력팀장인 M, 피고인 A 시판채널 담당팀장인 H, K 시판영업 담당부장으로 근무한 N은 아래와 같이 위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M는 검찰에서 "2016. 2.경 C 상무님께서 저에게 제조사 임원들끼리 소매점 침탈을 금지하자 등의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실무팀장들이 나올거니까 서로 인사하고, 팀장들끼리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팀장들이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55쪽), 원심 증인신문에서는 첫 시판채널 팀장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C 상무님께서 시판 내용 전반에 대해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니까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실무적인 일을 진행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H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초 제조4사 임원들이 먼저 만났다는 사실 있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팀장들이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D 상무가 제조4사 임원 모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제조4사 임원들끼리 만나 보았으니 저에게 제조4사 팀장들끼리 만나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3권 682, 683쪽), 검찰에서는 "2016년 초에 G회사 B 본부장이라는 분이 D 상무에게 전화해서 4사 임원들이 한 번 모이게 되었다. 그 이후 D이 '팀장들도 만나서 어려운 시장 잘 고민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찾아봐라'는 취지로 지시해서 팀장들끼리 연락이 되었고, G회사 O 팀장이 처음 연락을 하여 첫 팀장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038쪽), 원심과 당심 증인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진술을 하였다.

○ N은 검찰에서 "2016. 2.경 E 이사님이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 모임에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각 업체들이 노력을 하자라는 기본적인 합의에 대하여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47쪽).

② 피고인들은 자진신고자 지위에 있는 회사 관계자가 한 진술은 단지 진술의 취지가 일치한다거나 일관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실제 이루어진 합의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세부적인 개별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 D을 끌어들여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2016. 2.경에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했다면 곧바로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실행했어야 함에도 2016. 8.경 정도부터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6. 2.경이 아닌 그 이후에 합의가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B, L, C,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6. 2.경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되고, 합의시점과 본격적인 합의의 실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G, J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 사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2016. 8.경부터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2권 551, 552쪽), B는 "합의 직후에는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합의 이행을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소매점 침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이 발생하면 침탈된 소매점을 원상복귀 시키거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소매점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협의를 제조4사 팀장들이 하였고, 저는 팀장들로부터 협의경과, 협의결과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2권 415쪽), K의 E는 원심 증인신문에서 '2016. 2.경 소매점 침탈금지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매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나 점주가 바뀐 경우 등과 같이 실무상 조율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늦게 이루어졌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또한 피고인 A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 사례는 2016. 1.경 20개에서 같은 해 2.경 3개, 같은 해 3.경 3개, 같은 해 4.경 1개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같은 해 5.경 10개, 같은 해 6.경 15개로 다시 늘었으나, 같은 해 7.경 9개, 같은 해 8.경 6개, 같은 해 9.경 1개로 다시 줄어들었는데(증거기록 2권 552쪽), G의 L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6. 2.부터 2019. 9.까지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준수되었다. 간혹 가다 합의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제조4사 팀장들이 만나 침탈된 소매점을 원상복귀 시키거나 침탈된 소매점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거래처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협의를 하였다. 2019년 공정위 조사 전까지는 소규모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협의하여 해결하는 중재시스템이 계속 존재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430쪽)고 진술하였고, G의 O은 "2016년 2월에 만난 이후로 소매점 침탈이 발생하면 제조4사 팀장들이 서로 유선통화를 하면서 원상복귀나 보상 등을 협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470쪽).

2)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6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의 시판채널 담당 임직원들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하게 된 경위, 합의의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 A 등 제조4사는 2017. 3. 23.자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아 2017. 11. 1.부터 대리점에 대한 약정지원율과 초과지원율 상한을 모두 80%로 제한하자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임직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자진신고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총지원율'은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출고가격-납품가격)과 판촉, 장려금 등을 통한 할인금액 총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제조4사가 사용하는 총지원율의 개념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와 다른 3개 회사들 사이에 총지원율 상한 제한에 관한 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다른 회사와의 총지원율 비교를 위해 자사 기준 총지원율을 다른 회사 기준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자료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별책 2권 287~291쪽), K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대리점에 대한 계약서상 지원율' 자료를 제출하면서 '에누리'와 '총지원'을 구분하고 각각 '당사 내부자료 기준'에 따른 수치와 'A 등 제조4사 공통기준'에 따른 수치를 기재한 점(증거기록 별책 2권 297쪽), J의 C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제조4사들은 대리점의 계산관행에 맞추어 서로 이야기하였고 각 회사 내부적으로 지원율 계산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76%, 80%라고 이야기하면 제조4사 모두 정확하게 납품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별책 2권 546, 547쪽), J의 M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소매점, 대리점에 대한 영업을 할 때 대외적으로는 제조4사의 지원율 계산법이 모두 동일합니다. J, A, K의 지원율 76%가 G의 지원율 52%와 납품가격이 같고, J, A, K의 지원율 80%가 G의 60%와 같습니다. G도 외부적으로 소매점, 대리점 영업을 할 때는 다른 회사들과 동일한 계산법을 사용한 지원율을 이야기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별책 2권 573쪽), 피고인 A의 H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제조4사 각 회사별로 내부적으로 지원율 계산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함께 얘기하거나 대리점, 소매점에 영업할 때는 동일한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제조4사간 이야기할 때 지원율 76%, 77% 등으로 이야기할 경우 모두 납품가격 수준을 정확히 이해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별책 3권 681, 682쪽), K의 N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제조4사별로 내부적으로 지원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도 함께 얘기할 때나 영업할 때는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지원율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조4사가 76%, 80% 등으로 이야기할 경우 동일한 납품가격을 지칭하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별책 3권 7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등 제조4사가 내부적으로 지원율을 산정하는 방식에 서로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총지원율의 상한을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G의 L이 작성한 2017. 9. 8.자 메모에는 '지원율: 사전 D/C + 장려금 외 불가 → 모든 판촉 일절 중단', '지원율 계산의 단순·표준화로 투명한 지원관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2권 298쪽).

③ 피고인 A의 대리점 총지원율 현황표를 보면, 2017. 7. 81%, 같은 해 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80.9%, 같은 해 9. 81.1%, 같은 해 10. 81.4%의 총지원율을 기록하다가 같은 해 11. 80.2%이고, 같은 해 12.부터 2019. 9.까지는 총지원율이 80.1%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데[3](증거기록 별책 2권 294~296쪽), 피고인 A가 다른 3개 회사들과의 2017. 9. 8.자 합의에 따라 2017. 11.경부터 총지원율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G의 L은 "약정지원율이 이미 80%를 넘긴 대리점의 경우 초과지원율 상한만 80%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A도 P 등에 대해 약정지원율이 80%를 넘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2017. 9. 8. A 등 제조4사 임원모임에서 약정지원율 상한도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별책 2권 437쪽)까지 더하면 피고인 A도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3)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7에 대하여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의 시판채널 담당 임직원인 Q, M, N, L, C, E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홈류 제품의 정찰 전환 합의를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임직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자진신고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2019. 2.은 80.3%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②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2017. 하반기 무렵부터 홈류 제품의 정찰제 도입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H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홈류 제품군 정찰제를 4,500원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에게 마진을 20%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대리점들이 마진을 20%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조4사 팀장들이 25%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저는 25%는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대리점과 협의를 계속해서 마진을 22% 보장해 주기로 했고 홈류 제품군 정찰가격으로 4,500원을 설정하고 대리점에 마진을 22%, 소매점에 마진을 30%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별책 3권 693쪽) 다른 제조3사 팀장들과 홈류 제품의 소매점, 대리점 마진율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를 포함한 제조4사 사이에 홈류 제품 정찰제 도입에 관한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G의 Q은 원심 증인신문에서 "2018. 1. 9. 합의하기 전에도 홈 제품에 대해서 정찰제로 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2017. 11.경 대리점 지원율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팀장들 사이에서 고정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30쪽). 또한 합의 이전에 피고인 A가 먼저 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A가 홈류 제품 시장에선 가장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사실상 정찰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피고인 A가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 충분하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의 M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서 "홈류 제품은 정찰제 4,500원, 5,500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4,500원입니다. J는 홈류 제품이 R(4,500원), S(4,500원)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모두에 정찰제 도입 합의가 적용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별책 2권 592쪽), ② G의 Q은 원심 증인신문에서 "홈 제품이 저희 T과 똑같은 것이 F 같은 경우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용량이 작은 것은 저희 T과 4,500원으로 똑같고, 큰 것은 제 기억으로 아주 큰 것은 소비자들이 잘 아는 그것은 5,900원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4,500원 하는 부분은 저희 T이나 F 작은 것 비슷한 용량은 같은 가격으로 가져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8쪽) ③ 피고인 A의 H은 검찰에서 "팀장 모임이나 유선으로 확인 문의가 왔길래 저희 일정이나 정찰제 가격(F 5,500원, F 다양한 맛 4,500원 등)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같이 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057쪽), 원심 증인신문에서는 "F 대짜 900미리 용량이 큰 것은 5,500원이고, F 다양한 맛 좀 용량이 작은 것은 4,500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럼 F는 4,500원, 5,500원인데, 언론에서는 그 중 하나만 정해서 (보도가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로."라고 답한 점(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3개 회사의 임직원들도 피고인 A가 F 바닐라에 대해선 4,500원이 아니라 다른 가격으로 정찰제를 시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 바닐라와 상관없이 F 다양한 맛과 다른 3개 회사의 홈류 제품의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9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1) 피고인 A, D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고인 A가 다른 3개사가 개당 가격을 1,500원으로 정한 2018. 10. 12.자 합의 당시 이미 1,600원에 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위 합의에 따를 이유가 없는 등 위 합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로서는 인하에 동참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 A를 제외한 제조3사가 피고인 A에게 가격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피고인 A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콘류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D이 콘류 제품 가격 인하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참조).

가격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합의된 가격의 고저 및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일시적인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24.자 2010두524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65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다른 3개 회사와 사이에서 2018. 11.부터 콘류 제품가격(G, J, K 각 1,300원, A 1,600원)을 인상, 인하를 통하여 개당 1,500원으로 맞추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를 비롯한 제조4사는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 기재 모임에서의 기본합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본합의를 파기하거나, 담합 관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제조4사의 시판채널 담당 팀장들은 2016. 2경부터 2019. 9경까지 거의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영업 관련 정보를 교환 또는 협의하여 왔고, 경쟁 자제 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정한 수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의 가격정책을 논의하여 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② G의 Q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팀장급 모임은 한 달에 1~2번 이상이었고, 모임이 있으면 제조4사 팀장들 모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본인이 2018. 10.경 J의 M 팀장, A의 H 팀장, K의 U 또는 N 팀장에게 유선전화를 통해 G는 2018. 11. 콘류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회사들에게 알려준 이유는 콘류 제품 시장점유율 1위인 G가 가격을 올릴 계획이니 다른 회사들도 같이 인상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2권 483쪽), 당심 증인신문에서는 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통보의 의미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이 기존 합의 내용과 같이 1,500원 가격 인상에 대해 따를 것으로 기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6쪽). J의 M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제가 2018. 9.경 G회사 Q 팀장으로부터 콘류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2018. 11.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G회사 Q 팀장이 저에게 콘류 제품 가격인상 계획을 알려준 것은 G가 인상하면 우리 회사도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인상하자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59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 제조4사 상호 간에 콘류 권장소비자가격을 G가 결정한 콘류 권장소비자가격인 1,500원에 맞추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③ 또한,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1,500원으로 조정한 것은 단순히 시장경쟁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다른 3개 회사와의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에 관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H은 2018. 10. 26.자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다른 3개 회사가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다[4].

○ 피고인 A, D은 H이 원심 증인신문에서 위 모임에서 우리는 콘류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상관없으니 빠지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9쪽)을 근거로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 이르러 처음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Q, M, U 모두가 H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거나 반대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모임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H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 피고인 A는 V에 투자를 많이 하였지만, 가격이 1,600원으로 다른 3개 회사의 콘류 가격보다 300원이 비쌌고, 아이스크림 소비자들의 기존제품에 고정된 선호, 저렴한 제품 위주의 구매성향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5]이었다. 피고인 A는 V의 판매율 또는 점유율이라도 증대시킬 동기가 있었고[6], 다른 3개 회사가 콘류 가격을 1,500원으로 정한 것을 인지한 상태[7]에서 V 판매 증대를 위해 V의 가격을 다른 3개 회사처럼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였다. H은 검찰에서 "경쟁사들이 콘류 제품 가격을 1,500원으로 간 후에, 저희 V도 1,5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였기 때문에 콘류 가격이 같이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권 1055쪽)."라고도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V 가격을 1,500원으로 조정한

4) 증거기록 별책 3권 694쪽,
5) 피고인 D은 원심 피고인신문에서 "1,600원이라 저희가 아이스크림콘이 적자 상태라 고민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6) 피고인 D은 원심 피고인신문에서 "설비를 다 투자해 놓았는데 가동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영업 입장에서는 물량이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21, 22쪽).
7) H은 당심 증인신문에서 '가격을 내릴 때 다른 3사에서 가격을 1,500원으로 정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린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데에는 피고인 A의 경영상 판단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2018. 10. 26.경 모임에서 이루어진 제조 4사 사이의 콘류 가격에 대한 의사연락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 V의 경우 피고인 A가 실제로 가격을 1,500원으로 인하한 것은 2019. 2.경이 아니라 2018. 12.경이다. 피고인 A의 2019. 2. 11.자 '19년 V Pricing 전략' 내부문서에는 '시판: 기준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현재 1,600원에서 100원 D/C하여 판매중) 시스템 내 변경사항으로 실제 운영가격 변화 없음(판매 및 수익 목표 변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2권 330쪽). G의 Q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A는 2018. 12. V 가격을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추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2권 484쪽), 원심 및 당심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 A가 12월에 1,500원으로 내린 것을 대리점을 통해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쪽). K의 U은 원심 증인신문에서 "아마 12월 경으로 기억됩니다. 대리점 납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J의 M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8. 11.경 G 및 K이, 2018. 12. J가 콘류 제품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A는 2018. 12. 1,600원으로 출시한 콘류 신제품 V 가격을 1,500원으로 조정하였다. 이때 권장소비자가격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593쪽).

나. 범죄일람표(유통채널) 연번 5에 대하여

1) 피고인 A, D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고인 A가 샌드류 제품인 W와 X를 각 개량하게 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어 원가가 상승하자 이를 개당 가격에 반영하였던 것일 뿐, 다른 3개사와의 합의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는 샌드류 제품의 가격인상은 원가 상승, 입점비 지출 등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의 냉동 CVS팀장 I이 2019. 1. 21.자 팀장 모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후, 상급자인 Y 상무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다른 3개 회사와 사이에 다른 3개 회사는 먼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콘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면, 뒤이어 피고인 A가 샌드류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다시 다른 3개 회사가 샌드류 제품 가격을 뒤따라 인상하는 방법으로 샌드류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의 빙과영업부 유통담당 팀장이었던 Z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8. 12. 12. 제조4사 유통채널 담당팀장들이 만나 판매가격이 1,500원인 콘류, 샌드류 제품의 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였고 2019. 1. 15. 콘류, 샌드류 제품의 가격을 2019. 3. 1.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G, J, K이 3월에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800원으로 먼저 인상하면 A가 뒤따라 샌드류 제품의 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하고 G, J, K은 샌드류 제품 재입고 시점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습니다.", "2019. 4. 모든 편의점들에서 콘류 제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었고 납품가격은 5월에 인상되었습니다. A는 2019. 6.경 샌드류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G, J, K은 2019. 9.경 샌드류 재입점 시점에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콘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2권 510, 511쪽), K의 시판 영업담당 팀장이었던 U은 "샌드류(모나카류)와 콘류 가격은 1,500원으로 동일했었는데 A가 먼저 샌드류(모나카류)를 1,800원으로 인상하면 G, J, K는 샌드류(모나카류)를 10월에 계절상품으로 납품하면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의 샌드류(모나카류)의 가격은 합의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3권 818쪽).

실제로 G는 2019. 2. 15. AA(AB편의점)에 2019. 5. 1.부터 AC, AD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9. 2. 21. AE, AF(AG편의점), AH에 2019. 4. 1.부터 AC, AD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별책2권 382~384쪽). J는 2019. 3. 7. AE에 2019. 4. 1.부터 AI, AJ, AK, AL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별책 2권 385쪽), K은 2019. 3.경 AE에 2019. 4. 1.부터 AM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386쪽). 피고인 A는 2019. 5.경 1,500원이었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하였고, G는 2019. 9.경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권 123쪽).

② Z는 검찰에서 "4사 유통팀장이 만나서 편의점과 재계약시 각 사가 납품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매출이 큰데도 이익 나지 않는 제품들(대표제품으로는 G의 AC, A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의 W, J AI, K AM)에 대해서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상하자는 공감대가 있어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019쪽), J 유통담당 팀장이었던 AN는 검찰에서 "2019. 1. 합의는 콘류, 샌드류를 선정하였는데 이 두 품목은 원가가 높고 마이너스가 심한 품목이었고 5~6년간 가격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품목부터 인상을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건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각 사별로 공통된 문제점이다 보니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894쪽), 피고인 A의 I 역시 검찰에서 "그 당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수익 구조가 너무 안 좋았고, 상대적으로 콘류, 샌드류 제품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 가격을 못 받고 있어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협의하고, 합의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06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샌드류 제품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했다.

③ 다른 3개 회사 팀장들은 위 모임에서 콘류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I에게는 샌드류(모나카류) 제품 가격 인상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았고, I은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I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Y 상무를 비롯한 상급자에게 위 모임의 내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8], Y 상무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I 팀장이 저에게 경쟁사를 만난 사실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별책 3권 6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Y 상무에게 위 모임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I이 피고인 A를 대표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이상 위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9]. 설령 I이 위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8)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I이 Y 상무를 비롯한 상급자에게 위 모임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증거순번 171번, 증거기록 별책 3권 731~736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은 검찰에서 "2019. 5.경에는 이미 G 등에서 콘 가격을 올린 이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임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308쪽), 당심 증인신문에서도 '다른 업체들이 콘류 가격을 1,800원으로 하기로 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A도 샌드류 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임원들은 다른 3개 회사의 콘류 가격 인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샌드류 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④ I은 검찰 조사에서는 "결론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석하고, 일부 동참한 것도 있지만, A 내부적으로 샌드류 제품 가격을 인상할 요인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타사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사실이 저희 제품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권 1305쪽, 1308쪽) 피고인 A가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과 당심 증인신문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가 내부적으로 샌드류 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한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는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I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샌드류 가격 인상 경위에 관하여 'W와 X 제품을 AO와 AP로 바꾸어 납품하였고, 부서별로 나누어 운영하던 제품들을 통합하였다. 샌드류 제품을 바꾸면서 입점비를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10], 원심과 당심 증인신문[11]에 이르러서는 '사업부가 나

9) I은 원심 증인신문에서 "당시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당심 증인신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해갖고 어떻게 인상을 하겠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6쪽), I은 단독으로 가격 인상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Y 상무는 아니더라도 다른 상급자에게는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0) 증거순번 50번, 171번. 증거기록 3권 1035쪽, 별책 3권 735쪽.
11)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누어지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물류, 마케팅 측면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상품 단위를 통합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3월부터 샌드류 단일화 논의가 있었다.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원가 부분도 대략 한 6%, 7% 정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진술하였던 바, I의 진술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 경위에 대한 설명이 정제되고 구체화되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과 당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⑤ K의 AQ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9. 1.경 제조4사 유통채널 담당 팀장들이 만나서 시판채널에서 콘류 가격이 인상되었으니 유통채널에서도 콘류, 샌드류 등 1,500원류 상품의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류 가격과 샌드류 가격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콘류, 샌드류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샌드류를 특정하여 별도로 가격을 올리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500원류 상품의 가격 인상 합의를 샌드류 제품을 상시운영하고 콘류 제품 가격이 이미 1,800원 수준이었던 A는 샌드류 가격을 인상하고, 샌드류 제품을 계절상품으로 운영하는 G, J, K는 콘류 가격을 먼저 인상한 뒤 샌드류 재납품 시점에 샌드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3권 831, 832쪽), 앞서 본 콘류와 샌드류 두 품목 모두 원가가 높고 마이너스가 심한 품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 제조4사는 콘류 제품 가격과 샌드류 제품 가격을 별도의 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콘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1,500원이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⑥ 설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신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상승하고, 입점비 등 지출이 발생하여 이러한 비용증가가 위 가격 인상에 있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샌드류의 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을 실행한 데에는 I이 2019. 1.경 참석한 모임에서 이루어진 콘류, 샌드류 제품 가격에 대한 의사연락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피고인 B, C,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12],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

12)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서울고등법원 2022누39125 판결에서 J에게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고인 C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과징금 감경, 형사고발의 유예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반상태 해소 및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것인 점, 동법 제129조 제6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이 확정되면 J는 2순위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 50% 감경의 혜택을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에게 공소 제기 후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C, E 및 검사의 피고인 B, C,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삭제하기로 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피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과 별지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 또한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8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8호(부당공동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항, 다.항 기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최종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경쟁 제한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엄 철 _____

판사 윤원묵 _____

판사 송중호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0

【고치는 부분】

원심판결 6면 6, 7, 8행 중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 2, 3, 4, 6, 7, 8 기재와 같이 2016. 2.경부터 2018.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를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 2, 3, 4, 6, 7, 8, 9 기재와 같이 2016. 2.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로, 9면 15, 16행 중 '위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 2, 3, 4, 6, 7, 8 및 제3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유통채널) 연번 1, 2, 3, 4, 6 기재와 같이'를 '위 제3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 2, 3, 4, 6, 7, 8, 9 및 제3의 다.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유통채널)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끝.